

# 技術導入案内(Ⅱ)

## V. 技術導入契約上의 不公正한 内容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第23条第2項의 規定에 의거 國際契約上의 不公正去來行為 類型中 技術導入과 관련되는 내용 및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1. 部品購入先의 指定

原材料 및 部品 等(以下 “原材料”라 함)을 技術提供者 또는 그가 指定하는 者로부터 不當하게 購入하도록 하는 경우(告示 第1項 가号)

#### 가. 告示内容 및 目的의 解說

原材料의 購入先에 대한 決定權은 그 物件을 사용하는 技術導入者에게 있어야 하며, 특정한 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技術提供者의 우월적 지위를 濫用한 것으로 不公正한 去來方法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가장 값싸고 좋은 品質의 原材料를 구입할 수 있는 可能性을 찾는 것은 技術導入者の 義務이며 権利로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技術提供者가 지정하는 高価의 原材料購買가 강요될 可能性을 높이기 때문이다.

#### 나. 具体的 事例의 說明

技術導入契約은 그 形態가 다양하고 技術提供者가 자신의 固有樣式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類型을 일일히 열거하기는 어려우나 빈번히 나타나는 不公正한 条項을 例示的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에 필요한 原材料, 機械, 設備 등을 技術提供者로부터 구입하

編輯者 註：本稿는 지난 호에 이어, 財務部에서 発行한 「技術導入案内更覽」(1973. 3)의 내용 중에서 발췌한 글임을 밝힌다.

여야 한다.」

本 事例는 특별한 이유의 명시없이 技術提供者로부터의 部品 등 購入이 강제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技術導入者의 購入先決定權이 부당하게 박탈되므로 不公正한 条項이며 부품 등은 技術導入者가 임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技術導入者는 技術提供者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技術導入者는 原材料를 技術提供者 또는 그가 지정하는 者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商標使用과 관련하여 購入先을 지정하는 경우로 상표의 신용확보를 위해 일정한 水準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契約製品의 品質 확보는 他物品 또는 他方法(例: 性能試驗)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購入先의 제한은 不公正한 条項이 된다.

原材料의 購入先을 제한하지 않으면 品質 확보가 불가능한 적극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品質의 保証을 위해서 技術提供者の 製品과 같은 水準의 製品를 생산할 수 있는 原材料를 사용한다.」든가 「技術導入者の 原材料가 品質 확보에 부적합한 경우, 技術提供者は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이한 경우로 「部品을 技術提供者로부터 구입한 契約製品에는 技術提供者の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条項은 商標使用 与否가 技術導入者の 판단에 의하므로 不公正한 契約條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도 「技術提供者は 국제적으로 타당한 가격과 조건 또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関聯部品을 공급한다.」는 規定을 첨부하는 것이 좋다.

3) 「契約製品 製造에 필요한 機械, 部品 등이 韓国에서 生산되지 않는 경우, 技術導入者は

技術供給者로부터 이를 구입하여야 한다.」

国内調達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특정한 購入先이 지정됨으로서 부당한 價格을 유발시킬 수 있고 第3의 시장을 찾을 수 있는 技術導入者의 権利를 박탈하게 되므로 부당한 条項이다.

따라서 技術導入者가 임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技術提供者와의 供給價格이 他供給者에 비해 유리하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 技術導入者는 技術提供者的 原材料를 購入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4) 「技術導入者는 原材料를 技術提供者와 品質을 인정한 곳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한다.」

기술提供者가 品質을 인정하면 어느 곳에서나 구입할 수 있지만 技術提供者만이 品質에 대한 判断權을 갖게 되어 부당하게 運用될 possibility가 있다. 따라서 購入을 技術導入者에게 일임하거나 「品質에 관하여는 相互協議하여 契約製品의 品質 확보가 가능한 原材料를 구입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2. 販売地域(輸出地域 包含)의 制限

기술提供者가 提供한 技術(以下 “契約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製造한 製品(以下 “機契製品”이라 한다)에 관하여 販売地域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輸出制限地域의 경우로서 다음 각号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技術提供者が 技術導入者の 輸出을 제한하는 地域(以下 “制限地域”이라 한다)에서 이미 契約技術을 登錄하고 있는 경우

② 技術提供者が 制限地域에서 契約製品에 대하여 경상적 販売活動을 하고 있는 경우

③ 技術提供者が 制限地域을 第3者的 独占的 販売地域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告示 第1項 나호)

### 가. 告示內容 및 目的의 解說

契約製品을 어느 地域에 판매할 것인가는 技術導入者の 意思決定에 의하여야 하며, 国内の 販売地域을 한정 또는 分할시키거나 輸出地域

을 제한하는 것은 不公正한 行為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技術導入契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輸出地域의 제한이다. 이것은 개별적인 기업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經濟가 海外市場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規模의 경제를 이룩할 수도 장기적으로 經濟成長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실정을 감안할 때 단지 技術導入者 자신은 현재 輸出할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또 契約 당시에는 그다지 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러한 制限規定이 威力を 발휘하여 企業과 나라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輸出地域을 제한하더라도 本條項의 但書規定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但書 1号의 경우는 制限地域内에서 技術提供者가 이미 法的 保護를 받는 特허권 등을 登錄하게 되면 技術提供者가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그 地域으로의 輸出은 法的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但書를 인정한 이유는 技術提供者 자신이 이미 개척하여 놓은 시장을喪失하면서까지 그 地域으로의 輸出을 허용하는 것은 通常의 生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經常的 販賣活動”이란 支店, 営業所 등 恒久的 施設을 설치하여 日常의 生产 또는 판매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헐적인 販売 정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但書 3号는 技術提供者が 특정한 目的으로 第3者의 独占的 販売權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다시 他技術導入者에게 그 地域내로 수출을 허용하는 것은 契約違反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다.

上記 但書條項 등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契約內容에 일부 또는 전부가 삽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但書 1号와 2号는 契約當時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앞으로의 予定地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但書 3号는 契約 당시 또는 契約期間中 확정된 곳에 한하여 단순한 計劃地域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 나. 具体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는 계약기간중 契約製品을 수출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없이 販売地域을 제한하는 것은 経済権의 부당한 침해로 불공정한 去來行為가 되며, 契約製品을 技術導入者가 수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告示但書 条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

2) 「技術導入者는 韓国内에서 契約期間中 契約製品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 또는 「技術提供者は 技術導入者에게 韩国内에서 契約製品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許す한다.」

輸出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輸出制限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러나 輸出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향후 紛争時 技術導入者の 부당한 피해방지를 고려할 때 輸出許容与否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거나 또는 「韓国内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판매할 権利(Rights to produce in Korea and sell)」로 수정하여야 한다.

3) 「契約製品은 韓国 및 東南亞地域에 한하여 販売하여야 한다」 또는 「契約製品은 美國, 日本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国家에도 販売할 수 있다.」

告示但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経営権의 부당한 침해이며, 따라서 但書地域 以外의 地域과 但書地域 中 技術提供者が 허락한 地域에 대하여는 수출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4)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技術提供者の 사전 書面同意(승인 또는 합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技術提供者が 技術導入者の 契約製品에 대한 輸出許容与否의決定權을 가지게 되어 技術提供者が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부당한 조항이 된다.

따라서 契約製품을 技術提供者の 동의(승인, 합의) 없이 輸出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필요시 但書條項을 활용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동의, 승인 또는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事前協議나 통지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技術

提供者가 輸出許容 여부의 결정권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5)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통상 실시료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한다.」

契約製品의 국내 판매에 대하여 一定技術料를 지불하도록 約定하고 輸出分에 대하여는 割増料를 부과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수출의 경우에도 국내販売와 동일한 技術料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割増料, 賦課地域이 告示 但書해당지역인 경우에는 불평등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3. 販売窓口(輸出窓口包含), 販売価格 등의 제한

契約製品에 관하여 技術導入者の 販売窓口, 販売数量 또는 販売価格 (“再販売価格”을 포함한다)을 제한하는 경우.

다만 技術提供者が “나号”的 制限地域에 대하여 技術導入者の 수출을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告示 第1項 나호)

#### 가. 告示内容 및 目的의 解説

販売行為 등 経営方針은 그것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 한 経営者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販売窓口(販売先), 数量, 価格 등의 결정이 他契約当事者에 의해 강요되는 것은 공정한 去來行為로 볼 수 없다. 本 条項은 수출과 국내販売의 모든 경우에 적용되며, 예를 들어 輸出価格이나 輸出市場에서의 小売価格을 구속하는 것도 불공정한 去來行為가 된다.

輸出制限地域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但書條項이 설정된 이유는 본 条項은 원래 수출이 가능한 것을 한 것으로서 技術提供者が 제한할 수 있는 市場을 技術導入者에게 분할하여 주면서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技術導入者는 輸出制限의 해제에 따른 이익과 輸出制限의 불이익을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 나. 具体的事例의 説明

1) 「技術導入者は 技術提供者が 지정하는 자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販売窓口를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의 부당한 침해로서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が 임의로 선택한 窓口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告示 “나”号 但書地域에 대한 輸出窓口 제한은 告示 “다”号의 但書에 따라 인정된다.

2) 「技術導入者は 全生産物量 또는 그 일부를 반드시 技術提供者에게 수출하도록 한다.」

開発初期의 경우 技術提供者를 이용하는 것이 輸出市場開拓에 유리한 면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技術提供者は(技術導入者が 생산한 契約製品을 수입하도록 노력하여) 技術導入者の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수입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로 수정하든지 또는 「이 경우 技術導入者の 輸出価格의 수준으로 両当事者間의 합의에 의한다.」는 단서를 추가시켜야 할 것이다.

3) 「技術導入者は 技術提供者が 지정한 者 또는 技術提供者の 승인을 받은 특정업체나 高級小売店에서만 契約製品을 판매할 수 있다.」

本 条項도 販売窓口를 지정하는 불공정한 조항으로서 「技術導入者は 技術提供者の 품위를 실추시키지 않을 高級小売店 등에서 契約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4) 「契約製品의 輸出価格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契約製品의 가격은 우리나라 市場内 他会社의 類似製品의 평균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販売価格의 결정은 企業의 経営戦略이므로 특별한 이유없이 販売価格을 제한하는 不公正 条項으로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が 임의로 販売価格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告示 “나”号 但書地域에 대한 輸出価格 指定은 인정된다.

5) 「契約製品은 100万個 이상 수출할 수 없다.」 또는 「100万個 이상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技術提供者の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販売数量을 제한하는 不公正 条項으로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が 임의로 輸出

数量을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告示 “나”号 但書地域에 대한 수출수량 제한은 인정된다.

#### 4. 競争品, 競争技術의 取扱制限

競爭的 製品의 取扱이나 競争的 技術의 사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告示 第1項 라号)

##### 가. 告示内容 및 목적의 解説

本 条項은 契約製品이나 契約技術과 競争關係에 있는 유사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 및 기술의 취급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技術導入者の 製品多様化 또는 他先進技術導入 등이 불가능하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독점적 실시권이 허용되어 技術提供者와 국내 타사업자에 대한 實施權許与가 배제되어 있는 경우에는 導入者の 既保有技術의 사용이나 既存製品의 판매를 제한하지 않는 한 競争技術이나 제품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된다.

##### 나. 具体的 事例의 説明

1) 「技術導入者は 契約期間中 契約製品과 경쟁이 되는 여하한 제품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되어 第3者와 競争技術導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또는 「技術導入者は 契約期間中 契約製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技術導入者が 계약제품과 경쟁적인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契約終了後 2年 이내에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실시권의 형태가 비독점적 실시권인 경우 競争製品이나 技術의 취급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하거나 또는 技術導入者が 경쟁제품(즉 生産경쟁제품 포함)을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독점적 실시권의 경우에는 地域内에서의 독점적 生産販売權이 주어지므로 競争製品技術의 취급이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기존 生産하고 있는 競争製품의 제조, 판매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技術導入者는 契約製品과 경쟁적인 제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된다. 다만 이미 製造·販売하고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条項은前述한 이유로 독점적 實施權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2) 「技術導入者는 계약제품과 경쟁적인 제품을 製造·販売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技術提供者의 事前書面同意(승인, 합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本条項의 경우 技術提供者가 경쟁제품의 취급제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므로 앞의 경우에 준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통지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결정권을 技術導入者가 가지므로 인정된다.

3) 「技術導入者는 계약기간 滿了以後 3년간은 경쟁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契約期間 滿了 以後의 경쟁제품의 제조 판매는 여하한 경우에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항은 삭제하거나 技術導入者가 契約滿了後에 경쟁제품을 자유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4) 「技術導入者는 本契約의 早期終了 되는 경우 終了後(또는 終了後 3년간)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契約의 早期終了事由가 技術提供者的 帰責事由에 기인한 것일 경우는 (3)項의 경우와 같다.

다만, 技術導入者에게 技術料支払拒絕 등 帰責事由가 있는 경우 기술제공자에 대한 被害補償이라는 면을 고려할 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쟁제품의 取扱制限期間은 당초 계약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改良技術의 一方的 提供 등

契約當事者間의 互惠의인 의무없이 技術提供者에게 계약기간중에 개발된 改良技術을 일방적으로 제공 또는 보고하게 하는 경우(告示 第1項 마号)

### 가. 告示内容 및 目的의 解說

本条項은 소위 一方의 「그랜트 백」(Grant Back)

의 禁止 規定이다. 技術導入者가 契約技術을 기초로 하여 改良한 技術은 어디까지나 技術導入者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改良技術은 技術導入者에게帰屬되어야 하며 그 사용도 技術導入者의 自由의사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本条項의 기본적 判斷 基準은 互惠平等의 원칙으로서 改良技術에 대한 權利의 帰屬, 告知義務, 實施地域, 實施權의 形態(독점, 비독점), 實施期間, 實施對價, 再實施權 등에 있어서兩當事者間에 互惠平等의 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나. 具体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에 의해 개발된 改良, 改善, 發明 및 이에 따른 特許權 등을 技術提供者の 所有로 한다.」

또는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과 관련하여 改良을 한 경우, 技術導入者와 技術提供者は 共同名義로 또는 각각의 国家에 있어自己名義와費用으로 特許를 출원할 권리를 가진다.」

기술導入者の 노력에 의해 이룩된 改良技術이 技術提供者の 권리로 귀속되는 것은 당연히 부당한 条項이 되며, 技術導入者の 所有가 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만 帰屬自体가 互惠의인 경우 즉兩當事者의 改良技術에 대하여同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平等한 것으로 인정된다.

2) 「技術導入者가 契約製品과 관련하여 改良을 한 경우 技術提供者は 一定한 対價를 支払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對價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技術導入者の 의사와는 관련없이 일방적으로 技術提供者에게讓渡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불평등한 条項이다. 따라서 이 경우도 技術導入者の 改良技術은 技術導入者の 所有가 되도록 하거나 「價格은 상호 協議하여 결정한다.」라고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対價支給規定이 호혜적인 경우는 평등한 것이 된다.

3) 「技術導入者가 契約技術과 관련하여 改良을 한 경우에는 技術提供者에게 즉시 書面으로通知하여야 한다.」

兩當事者가 技術을 改良할 가능성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技術導入者만이 자신의 改良技術을 提供하는 것은 불평등하다. 따라서 本條項을 삭제하거나 当事者間に 호혜적인 告知義務가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技術提供者の 동의없이는 技術導入者が 契約技術을 改良 또는 研究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당연히 수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4) 「技術提供者は 자기가 이룩한 改良, 發明에 대하여 契約期間동안 技術導入者에게 韓國內의 独占実施権(非獨占実施権)을 부여한다. 技術導入者の 改良, 發明에 대하여 技術提供者は 契約期間中 韓国以外의 全世界에서 独占実施권(非獨占実施権)을 갖는다.」

韓国을 제외한 全地域에서 技術提供者が 独占実施権을 갖는 것은 改良, 發明을 讓渡하는 것과 같은 결과로 불평등한 것이 된다. 또 非獨占実施権의 경우라도 實施権의 地域이 불평등하여, 「技術導入者は 東南亞地域, 技術提供者は 東南亞以外의 지역에서 實시권을 갖는다.」는 규정도 實施地域이 불균형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規定은 両当事者間に 호혜적인 實施地域을 갖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5) 「技術提供者は 자기가 이룩한 改良, 發明 등에 대하여 契約期間동안 技術導入者에게 韓國에서 非獨占実施権을 부여한다. 技術導入者の 改良技術에 대하여 技術提供者は 自國內에서 独占実施권을 갖는다.」

實施地域은 호혜적이나 實施権의 形態에 차이가 있어 不平等한 경우이다. 즉 技術導入者は 비독점이라는 약한 権利를 갖는데 반해 技術提供者は 독점이라는 강한 権리를 갖는다. 따라서 当事者間に 호혜적인 権리를 갖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6) 「技術導入者は 契約製品과 관련하여 技術提供者が 행한 改良, 發明의 特許権 등을 契約期間동안 無償으로 사용하는 独占(非獨占) 實施権을 갖는다. 技術提供者は 技術導入者が 행한 改良, 發明 이에 따른 特許権 등을 有効期間동안 無償으로 사용하는 독점(비독점) 實施権을 갖는다.」

이 경우는 實施期間에 있어 평형을 잃고 있으

므로 当事者間に 호혜적인 實施期間을 갖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7) 「技術提供者は 契約期間동안 자기가 행한 改良, 發明 이에 따른 特許権 등을 적정한 対価를 받고 技術導入者에게 供与한다. 技術導入者は 契約期間동안 자기가 행한 改良, 發明 및 이에 따른 特許権 등을(무상으로) 제공한다.」

技術提供者の 改良技術에 대해서는 有償供与이나 技術導入者の 改良技術에 대해서는 無償으로 공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対価支払에 관한, 不平等條項의 예이다. 이 경우에도 当事者間に 호혜적인 対価支払規定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8) 「技術導入者は 技術提供者が 행한 改良, 發明 및 이에 따른 特許権 등을 契約期間동안 無償으로 사용하는 비독점(독점) 實施権을 갖는다. 이에는 再実施権은 포함되지 않는다.

技術提供者は 技術導入者が 행한 改良, 發明 이에 따른 特許権 등을 契約期間동안 再実施権을 포함하여 無償으로 비독점(독점) 實施権을 갖는다.」

기술提供者만이 再実施権을 가지므로 권리의 행사범위에 当事者間의 불평등이 있다. 따라서 技術提供者만이 再実施権을 갖는다는 文句를 삭제하거나, 호혜적인 再実施権을 갖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 6. 技術使用料의 不當한 徵收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 技術使用料를 부과하는 경우(告示 第1項 바号)

### 가. 告示内容 및 目的의 解説

기술導入者が 자신의 기술로 또는 第3者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사용해서 契約製品과 유사 또는 代替可能한 제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경우 당해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에 技術料를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

다만, 契約技術의 使用与否判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部分品으로서 그 使用与否를 일일히 점검해야 하는 繁雜性을 피하기 위하여

技術導入者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部品을 사용한 完製品価格을 기준으로 經常料를 算定할 수 있다.

#### 나. 具体的 事例의 說明

1) 「技術導入者が 契約製品과 유사한 제품(또는 競争製品)을 製造·販売하였을 경우 契約製品과 同額의 技術料를 지불하여야 한다.」 또는 「技術導入者は 本契約締結 以前에 이미 製造·販売하고 있던 同種製品에도 契約製품과 同額의 技術料를 支払하여야 한다.」

기술料는 당해 契約製品에 대해서만 支払되어야 하며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技術料를 지불하라는 것은 불공정하다. 또한 이를 인정하는 경우 競争製品의 취급을 제한하는 효과도 유발된다. 따라서 本條項은 삭제되거나 契約製品에 대해서만 지불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2) 「技術導入者は 契約期間 滿了 以後 契約製품을 生산할 경우 特許權 등이 消滅할 때까지 技術料를 지불하여야 한다.」

새로운 延長契約을 締結하지 않는 이상 技術導入者は 특허권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또한 技術提供者도 그와 같은 제품에 대해 技術料를 부과할 수 없다. 特許權이 아닌 「노하우」 등 技術情報인 경우 契約滿了 이후에도 技術導入者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으므로 技術料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된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本條項은 삭제되어야 한다.

### 7. 契約期間 滿了後의 技術使用 制限

技術導入者が 導入한 工業所有權 以外에 대하여 契約期間 滿了後에 이미 제공한 技術資料의 返還을 要求하거나 계속적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  
(告示 第1項 사号)

#### 가. 告示內容 및 目的의 解說

契約期間 滿了 이후에는 商標權, 實用新案權, 意匠權 등의 工業所有權의 사용이 제한된다. 즉, 契約技術에 대한 特許權이 소멸되지 않는 한 技術提供者は 特許期間이 만료되거나 또는 提供

기술이 公知化될 때까지 그 기술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法的根拠을 갖고 있다. 다만 技術導入者が 契約製品의 生産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하여왔고 또 契約技術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生產活動을 중단하여야 되는 導入者の 입장은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第3者에게는 秘密을 지킨다는 保障下에 契約期間 滿了 以後에도 契約技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하우 (Know-How) 등의 一般技術 情報의 사용을 契約滿了 以後에도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技術에 대한 代價가 이미 지불되어 知識으로써 이전되고 技術導入者の 所有物化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契約 内容이 된다. 다만 技術導入者の 帰責事由로 早期終了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 나. 具体的 事例의 說明

1) 「契約期間이 만료된 이후에 技術導入者は 契約製품을 製造·販売하여서는 안되어 제공된 모든 技術資料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契約期間 滿了 이후에는 当該技術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契約製품의 製造·販売를 금지시키고 이에 관련된 情報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不公正한 契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特許權 등 工業所有權에 대하여는 이러한 制限이 가능하나 当該 特許權 등이 소멸된 후에는 사용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技術情報의 경우 契約期間 滿了後에는 기술자료를 반환하지 않고 当該技術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工業所有權이 허여된 경우에는 工業所有權 消滅 이후에 当該技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契約이 (早期)終了되는 경우 技術導入者は 契約製품을 製造·販売하여서는 안되어, 제공된 모든 기술자료 등을 技術提供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기술導入者の 帰責事由가 없는 한 当該技術의 사용이 금지될 정당성이 없으며 이와 같은 규정에는 반드시 「기술導入者の 帰責事由로 早期終了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 8. 其他 國際慣例上 부당한 조건

技术導入者에게 國際契約慣例上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拘束条件을 부과하는 경우 (告示 第1項 아号)

### a. 告示目的 및 내용의 解說

國際慣例上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한拘束条件이란 선진국 상호간에 통용되는 國際慣例上의 許容範囲를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불리한条件을 강요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契約書形態上評価할 수는 없으나 기본이 되는 것은互惠平等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具体的 事例의 説明

1) 「技术導入者는 契約製品販売와 관련한 광고 및 販促活動에 대하여 技術提供者の 事前同意를 받아야 한다.」 또는 「技术導入者는 매년 販売額의 3% 이상을 광고비로서 지출하여야 한다.」

広告費, 広告方法 등을 구체적으로 指定하거나, 技術提供者の 事前同意(승인, 합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経営権의 부당한 干渉이 되므로 이와 같은 규정은 삭제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2) 「技术導入者는 技術提供者の 書面同意를 얻지 않고는 契約製品의 모델 및 그 부품의 디자인을 변경시킬 수 없다.」

商標権, 意匠権의 사용에 따라品質保証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技術導入者の 経営権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関聯規定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商標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技术導入者가 변경한 모델 및 디자인에 대하여 技術提供者は 적절한 助言을 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바람직하다.

3) 「技术導入者는 契約製品 販売에 있어서 40% 이상의 市場占有 rate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解止할 수 있다.」

市場占有率은 製品需要, 価格, 品質 등에 결정되는 것으로 技術提供者の 강요에 의해 一定水準이 강요되는 것은 市場確保를 위한 不公正

去來를 유발시킬 우려가 많다. 따라서 「技术導入者는 契約製品의 판매에、최선의 노력을 한다.」 등의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4) 「技术提供者は 技術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 免責된다.」

기술提供者が 提供技術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落後 또는 不良技術이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할 때 技術料支払의 타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契約技術 自体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製造過程 또는 販売過程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技術提供者の 免責條項은 技術, 人力, 原材料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인정될 수 있다.

5) 「技术提供者は 本契約을 언제든지 解止할 수 있다.」

기술提供者が 언제든지 계약을 解止하는 것은 技術導入者の 지위를 현저히 불안정하게 하며, 중도의 일방적 파기로 技術導入者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기 쉽다. 따라서 계약의 解止는 원칙적으로 技術導入者の帰責事由가 있거나 또는 両当事者間의 합의가 성립된 때에 한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6) 「紛争이 있는 경우 技術提供者が 속한 국가(예: 일본)의 仲裁機関의 仲裁에 의한다.」

기술提供者の 国内機関이 紛争을 仲裁하는 것은 중립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紛争의 仲裁는 상호 호혜적인 기관(예: 韓日商事, 国際商事)이 담당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